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4.19.)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진)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1년 04월 08일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고, 2021년 04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과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경우회 지원사업 범위(안 제3조)
- 나. 경우회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4조)
- 다. 보조금관련 준용사항(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과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칙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경우회 지원 사업 범위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신청 및 결정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관련 준용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그 조직은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를 두며 사업으로는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치안 협력 및 지원, 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 이를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평창 경우회는 50여명 구성의 지역회로, 평창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주변 및 우범 지역 순찰, 각종 행사 교통정리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가 신설되어,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 보조금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조례에 지원 사업 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 강원도 내 입법례는 동해, 영월, 정선, 횡성, 속초, 고성, 강릉 7곳이며 재향경우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유지 협력 및 공익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사업 결정 시 타 단체 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 효과성 등과 관련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